

김선화 / 5월 / 실전GS / 6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62246	20	10.5	18	10	58.5	1	3.57%	28
563526	21	8.5	19	9.5	58	2	7.14%	
563465	16	14	18.5	9	57.5	3	10.71%	
562197	17	8	19	11	55	4	14.29%	
562274	16.5	6.5	19.5	12	54.5	5	17.86%	
562775	17	9.5	16	11.5	54	6	21.43%	
563410	17.5	11	14	11.5	54	6	21.43%	
549661	19.5	6	15	12.5	53	8	28.57%	
562222	10	13.5	20	8.5	52	9	32.14%	
562199	18.5	5	18.5	8.5	50.5	10	35.71%	
563201	14.5	8.5	17.5	10	50.5	10	35.71%	
548701	15	6.5	18	10.5	50	12	42.86%	
562272	13.5	9	16	11	49.5	13	46.43%	
563271	16	6	18	9	49	14	50.00%	
563404	15	7	18	9	49	14	50.00%	
548660	14.5	10.5	16	7	48	16	57.14%	
549662	15	11.5	14	6.5	47	17	60.71%	
562882	17.5	7	16.5	5.5	46.5	18	64.29%	
563313	15	11	13.5	7	46.5	18	64.29%	
562194	9	12	17	8	46	20	71.43%	
563450	10	11.5	15	8	44.5	21	75.00%	
562980	12.5	9.5	19	3	44	22	78.57%	
562200	11	9.5	14.5	8	43	23	82.14%	
562215	14.5	8	12	6	40.5	24	85.71%	
562985	9.5	5	18	7.5	40	25	89.29%	
550636	15.5	6	11	0	32.5	26	92.86%	
563411	12	8.5	12	0	32.5	26	92.86%	
563068	11.5	6.5	2.5	0	20.5	28	100.00%	



저작권법 실전 GS
6회차 채점평

김선화 변리사

유화정 변리사

김동현 변리사

문제 1

2차적저작물과 프로그램의 일시적복제

설문 1

- 설문(1)은 프로그램 B 및 프로그램 C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B의 경우 프로그램 A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2차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프로그램 C의 경우 프로그램 B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마찬가지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됩니다.
- 대부분의 답안이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 키워드를 살려 포섭을 잘 해주셨습니다.

설문 2

- 설문(2)는 乙에게 프로그램 C를 제작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乙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있는지, 없다면 프로그램 A를 기초로 프로그램 C를 작성할 이용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 일부 답안은 프로그램 A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였으나, 이용허락의 존재를 누락하였습니다. 정당한 권원에는 권리 자체 뿐만 아니라 이용허락이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부 답안은 프로그램 B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기재하는데 답안을 할애하였는데, 프로그램 A에 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주는점이므로 문제되는 사안을 강조하여 답안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 3

- 설문(3)은 '제35조의 2에 해당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丁의 주장' 당부와 丁이 丙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丁의 행위는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는 일시적 복제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가 아닌 바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대부분 논점과 결론을 잘 기재해주셨습니다.

총 평

문제 1은 저작물이 프로그램 A, B, C로 세개가 등장하고 그 논점 또한 2차적저작물이어서 사안 포섭을 기재함에 있어 헛갈리는 지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대상'과 '주체'를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포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2

티셔츠 도안과 배포권 권리소진

설문 1

- 설문(1)은 이 사건 서명 및 이 사건 제호의 저작물성을 묻고 있습니다. 제호 및 서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결론을 틀린 답안이 많은 설문이었습니다. 문제에서 창작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설문 2

- 설문(2)는 이 사건 제호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제호의 형태나 글자의 배열이 단순하여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과 관련된 키워드인 '본래의 기능' 및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을 포섭한 답안이 돋보였습니다.

설문 3

- 설문(3)은 이 사건 티셔츠의 배포권이 소진되었다는 丙 주장의 타당성을 묻고 있습니다. 배포권 소진 일반의 법리와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수입된 경우에 관한 판례를 기재하고, 국내 판매에 대한 甲의 허락이 없어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관련 판례를 올바르게 기재하였으나,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안을 포섭하지 않은 답안이 많았습니다. 제20조는 허락 하에 거래에 제공된 경우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규정하므로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포권 소진의 요건을 포섭하여야 합니다.

총 평

문제 2는 각각의 설문의 결론을 맞추는 것이 까다로워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에 주어진 사안이 간단하여 사안포섭의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배포권 소진 논점의 경우 이번 기회로 사안의 어떤 차이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침해

설문 1

- 설문(1)은 甲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이 사건 앱의 부동산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을 특정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고 상당한 투자를 한 주체가 甲임을 기재하면 됩니다.
- 대부분의 답안이 잘 기재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여부를 별도로 포섭한 답안이 돋보였습니다.

설문 2

- 설문(2) 乙이 甲이 갖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乙의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만, 보호기간의 만료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보호기간을 누락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상표법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되듯 저작권법에서는 여러 권리의 보호기간이 논점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설문 3

- 설문(3)은 ‘개별 소재의 복제’에 해당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乙 주장의 당부를 묻고 있습니다. 제93조 제2항에 의해 개별소재는 상당한 부분이 아니지만 단서 규정에 의해 乙의 행위가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간주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대부분의 답안이 논점 및 결론을 모두 잘 기재해 주셨습니다. 다른 논점들과 마찬가지로, ‘반복적, 체계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섭하면 됩니다.

총 평

문제 3번은 각 설문의 결론이 명확하여 다른 문제에 비해 난이도가 쉬웠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설문(2)는 사안에서 ‘일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놓쳤다면 결론을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에서 ‘일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권리의 보호기간’이 논점이 된다는 트리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4

공중송신권의 하위개념과 그 구분

설문 1

- 설문(1)은 공중송신의 하위개념인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분을 묻는 단문 문제입니다. 동시성과 이시성, 쌍방향성과 일방향성, 주문성과 실시간성에 의해 구분되며 각 개념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 문제에서 묻는 순서대로 ‘하위 개념’-‘구분 기준’-‘판단’의 순서로 목차를 기재한 답안이 돋보였습니다.
- 마지막 문제여서 시간이 부족한 답안이 많이 보였는데, 이럴 경우 표를 이용해서 각 하위개념이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설문 2

- 설문(2)에서는 공중송신의 하위개념을 구별하는 실익을 묻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서 권리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설문(1)과 마찬가지로 조문 번호 기재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 저작권자에 있어서 하위개념의 구별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적은 답안은 적었습니다. ‘공통점’을 묻은 경우, ‘차이점’을 기재하면 추가 득점의 기회가 될 수 있듯이 본 설문의 경우에도 ‘구별실익이 없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추가 득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청구권 규정 (제75조 등)을 기재할 경우 ‘음반’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을 누락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총 평

문제 4는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자주 작성해보지 못한 논점이어서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낯선 단문 문제의 경우 기본 법조문을 기재하고, 목차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단문인 만큼 이번 회차를 계기로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6회차는 이전 회차보다 전체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㉔ 환 (2)

1. 프로그램 B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에 A에 대한 저작재산권도 함께 양도하지 아무 - 안

(1) 환

그저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이고, 그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양도하는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당연히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

특이 2011년 그저 저작물인 프로그램 B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은 양도하는 계약은 없으나 원저작물인 A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2. 그저 저작물 재산권 양도, 원저작물 이용허락 동행하는지 여부

(1) 환 (환)

원저작물과 그저 저작물 저작재산권 모두 분류한 각각 그 중 그저 저작물은 양도하는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포함되었는지 계약내용. 동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해야 한다.

(2) 사안

㉠ 甲은 컴퓨터 프로그램 A와 그저 저작물인 프로그램 B의 저작재산권과였고, 乙이 그저 저작물인 프로그램



자적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도 이용허락 또는 위반한 것이다.

2. 352의 ~~2~~ 제한 사유 종류 - 3종

(1) 이용내역에서 인사의 복제 (352의 2)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본이나 복본자의
접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
을 컴퓨터에 인사업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
이 침해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2) 원본이나 인본의 범위 (415)

인사업 복제가 저작물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원본, 인본성이나 호환성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도합한다는 한 가지인, 인사업 복제 자체가 독립된
경제적 효용 가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안

① 계약 체결 당시, 라이 약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접촉해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회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복제되
러게 사용된 것이나 볼 수 없음, ③ 프로그램
상업적 라이선스 판매량 감소한 등 공중해본
352 제한 사유 인정할 수 없음, 라이선스 복제
침해한 것이다.

2. ~~원~~ 대결

주인 권리 복제권도 침해하였라.

고수이요

<문제 - 2>

I. 원 (1)

35

35

1. 이 사건 ~~지적물~~ ~~지적물~~ - ~~지적물~~ - ~~지적물~~

(1) ~~지적물~~ 권리 (원 (1) 호)

지적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가) ~~판단기준~~ (원 (1) 호)

지적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나) ~~출처표시~~ 가능 있는 경우 (원 (1) 호)

지적물과 상당한 배타성 관계에 있어 양자 상호 귀속할 수 있는 도식 등 양자 지적물 원인 갖는 경우 지적물로 보호 될 수 있다.

(다) ~~사안~~

X 무의 서명은 일방 기보로 제작되고 영문 정보 용어로써 타자는 쉽게 복제. 판매 될 수 있는바, 응용 기술적 목이 해당한다.

2. 이 사건 ~~지적물~~의 경우 - ~~복제~~

(1) ~~판단기준~~



14

<문제 2>

I. 서문 (1)

1. 저작권의 의미 (제2(1))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2. 창작성 판단 방법 (제5조)

창작성이 있다는 것이 위태로운 것으로 보일 경우라도 본질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므로 저작자 나름대로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3.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피청의 저작권성

① 이 사건 피청은 what it is't 은 불과 3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② 어떠한 창작성이 있는 특별한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③ 따라서 이 사건 피청은 미미한 경우 창작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심판의 저작권성

① 이 사건 심판은 단순히 이 글을 복사한 것이 불과하다

② 어떠한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③ 이 사건 수명은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수명과 지은 연도 저작권에 대당하지
않는다.

Ⅴ. 서문 (2)

1. 응용미술저작물 의미 (제2(15))

응용미술 저작물은 문헌이 특정 대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이득된 문헌과 구분
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응용미술저작물 대안 요건

- ①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
- ②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3. 독자성 의미 (제33)

상대 문헌의 내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을 의미한다.

4.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지은 저작물로는 볼 수 없고
응용미술저작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본문 13)

5

1. 배타권 소권 의의 (실용신안)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저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배타권이 소권된다.

2. 배타권의 권리 소권 주요 여부

(1) 외국에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 11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양과 판매를 수입하여 이점된 경우에는 실용신안에서 정한 범위 내로 소권 여부를 판단한다 한다.

~~(2) 외국에서~~

3. 시판의 경우

① 이 시판 리시라는 것이 일방에서 시판으로 특허 시판이 제한된 범위로 되어 있다.

② 따라서 ~~주요권~~ 권리를 고에 의해 양도된 바 없으므로 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소의 주요권은 부당하다.

[문제-3]

20

I. 설문 (1)

1. 甲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사에 해당하여

(1) 데이터 베이스의 의미 (제 2319호)

소재를 제 계정으로 배분 또는 구입한 파일 목록, 개시연락으로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데이터 베이스 제작사의 의미 (제 2320호)

데이터 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개시·검색 또는 보류 기
인력 또는 물적으로 해당한 특리를 한 리를 만든다.

(3) 소재의 소재가 데이터 베이스 제작사의 의미 (제 2321호)

"... 해당 데이터 베이스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문의 경우.

i) 甲은 회원들로부터 공급받은 상가 리보를 건문리보로 업데이트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배설'하여

ii) 이 사건 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그 리보를
유리한 위치로 설치하여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상가 리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iii) 따라서 이 사건 앱은 데이터 베이스에 해당한다.

iv) 甲은 직원들을 고용해 '인력-물적으로 특리'하여
상가 리보를 매일 오전 10시에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개시·보류'하고 있으므로

v) 甲은 데이터 베이스 제작사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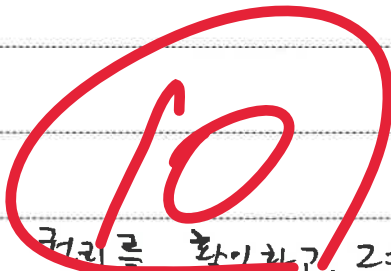
2. 결론

甲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

II. 석출(기)에 대하여

1. 논쟁거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甲의 권리를 확인하고, 그의 행위가 甲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와 데이터베이스 그 권리의 보호기간도 과외부를 판단한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甲의 권리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 93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저 데이터베이스 권 또는 상당부분을 복제·배포·발행하는 권을 가한다.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 (제 95조)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2) 데이터베이스 개인들은 위에서 인적 또는 물적 권 상당한 특하게 이룩한 계속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데이터 데이스 제작자 의 권리는 개인은 한 때부터 반대하여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3) 소출의 개격

1) 甲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권 또는 상당부분을 복제·배분·발행하는 권을 가한다.



ii) 그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각종 화로한 2019년 3월 28일의
다듬어진 2020년부터 5년간 권리가 존속한다.

3. 2의 제도가 ^{소극}부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강력}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요건. ^{원시}원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저작권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등을 하였거나 한다."

(2) 상당한 부분의 의미 -

^{원시}원시 (양적·질적인 측면 고려 ^{원시}원시)

"상당한 부분의 복제인리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리는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에 비교하여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리는 소액의 복제 등에 인격·물적 상당한

ضر해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4)

(3) 신문의 경우

i) 2은 ^{원시}원시 8000건의 상가정보를 7200건의 잉대정보를
그대로 크롬 닐 방식으로 복제 하였는데 이는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
에 해당한다.

ii) 또한 ^{원시}원시 매일오전 1시에 업데이트 하도록 직원들 고용하여

양적·물적 상당한 복제를 하였는데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에도

해당한다



ii) 따라서 2차 해킹은 甲의 데이터베이스의 '수량한 부분'을 복제-전송 한 해킹이므로 甲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소리가 많음.

iv) 그러나 甲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2019년 3월 20일 전에 생성된 ~~프로그램~~ 양대리보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부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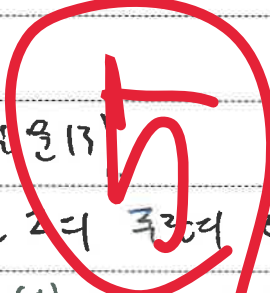
v) [전문] 2019년 3월 20일 전 생성된 양대리보에 대한 복제 및 甲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2025년 1월 10일에 침해했으므로.

Good

4. 결론

2은 甲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III. 설문 13



1. 2차 저작권 타당성 인정 여부 - 소극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프로그램~~ 개별 소액의 복제 (제 93조 2항 본문)

데이터베이스 개변 소액은 데이터베이스의 수량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음.

(2) 예외의 경우 (제 93조 2항 단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변 소액 또는 그 수량한 부분이 기록되거나

복사가 복제 등 기록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운 무작위 취해

해제 목적으로 행하여져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적 구성



종종 나가나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이식은 복잡하게 처리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보아.

(3) 소수의 경우.

i) 2의 개변소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ii) 그러나 2은 개변소래인 잉여정보를 대신해만 신청하여
 하루에 하나씩만 복제하여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스테이스나 주입시 ~~입 코드를~~ 이는 '반복적이거나
 독립한 목적은 위해 체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iii) 그결과 오피스앱 애플리케이션 다수가 스테이스나 주입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이는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이거나
 종용하며, 특정 ~~코드~~ 이식은 복잡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iv) 따라서 이러한 2의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보아.

v) [결론] 2의 행위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결론

2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기) 수신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 ① 방음과 리피리움은 수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저항과 리피리움은 수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쌍방향성의 미치지 않는 경우

- ① 방음은 일방성이다.
- ② 저항과 리피리움은 쌍방향성이다.

(다) 국외에 여부: 미치지 않는 경우

- ① 방음과 리피리움은 국제적으로 구분된다.
- ② 저항은 국외로 구분된다.

4. 결론

저항, 저항과 리피리움, 리피리움은 각각 방음, 리피리움, 음향음향은 다양한 기점으로 구분된다.

II. 결론 (기)

1. 사실

방음, 저항, 리피리움, 음향음향의 구분은 구분이 가능하다.

기

2. 저항, 리피리움의 구분

(1) 저항 - 음향음향

저항, 리피리움은 '음향음향'으로 구분된다.

(2) 단면

방공, 지상, 지체로 형성된 한쪽 또는 둘은 지체로 형성되거나
하방으로 형성된다. (제46조)

3. '실용권'의 구분

(1) 방공권 (제43조) 및 지공권 (제44조)

실용권은 방공권과 지공권이다.

(2) 방공, 지공에 관한 이용허락, (제48조 및 제46조)

방공, 지공 허락은 지는 지체로 형성된 이용허락으로
형성된다.

(3) 지체로 형성된 - 방공권 (제46조)

지체로 형성된 것은 이용허락이 아닌 방공권으로 이용
가능하다.

4. '음반제작권'의 구분

(1) 지공권 (제45조)

음반제작권은 지공권이다.

(2) 지공권에 관한 이용허락 (제48조 및 제46조)

지공 허락은 지는 음반제작권 이용허락이다.

(3) 방공, 지체로 형성된 - 방공권 (제42, 43조)

방공, 지체로 형성된 것으로 음반 이용허락은 지는 이용허락
이 아닌 방공권으로 이용된다.



4. 검토

공중공신초 급유기내장은 아용허각 이인 반상공리남 이복의
씨를 구해내어 왔다.

안사기요...!!
승인하셨습니까,

